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15
------	-----

2023. 05. 0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9일, 이종환 의원(찬성자 44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4.2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종환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를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명의 ‘문화도시’와 조문내용의 ‘문화시민도시’라는 용어가 맞지

않아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를 통일함.

- 현재 장기간 미운영 중인 문화도시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현실적인 정책 반영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 및 분과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서 법령의 위임 부분을 삭제함(안 제1조).
- 나. 종합계획의 명칭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에서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다. 제4장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로 변경함.
- 라. 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에서 ‘문화도시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5조).
- 마.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위촉 위원수를 3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규모 축소하도록 개정을 추진함(안 제16조).
- 바.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분과명 명시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수를 7명 이내에서 5명 내외로 정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함(안 제21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서울시는 문화도시 구현의 청사진을 담은 문화 분야의 중장기 계획인 「비전 2030, 문화도시 서울」을 10년 단위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음.
- 개정안은 이처럼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이들 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 위원회인 ‘문화도시위원회’와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용어의 정비(안 제13조, 제15조)

- 개정안은 조례 내용 중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일괄적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있음.

< 용어의 정비 >

구분	현행	개정안
제13조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	문화도시종합계획
제15조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 서울시가 2006년 최초로 수립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이 종료(10년 단위)됨에 따라 2017년 새롭게 수립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서는 기존의 핵심 방향인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서울시민 누구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기본 이념을 담아 “문화시민도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음.

- 그러나 관련 법령인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를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나, “문화시민도시”라는 용어는 관련 상위법령에서 통용되지 않는 실정임.
- 다만 ‘문화도시’라는 용어는 현행조례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문화도시’ 정의 규정 >

구분	“문화도시” 정의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문화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문화시민도시”에서 시민을 삭제하고 “문화도시”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 유지 등 보편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신설(안 제13조)

- 개정안은 시장이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서울시민과 서울시의 장기간에 걸쳐 핵심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과 방향, 추진 전략과의 연계성·내실화·실행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수립된 종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체계성과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위원회 구성인원 조정 등(안 제16조, 안 제21조)

- 개정안은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구성인원을 35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이내로 하고,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7명 이내에서 5명 내외로 축소하며, 분과명을 삭제하는 것임.
-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는 총 35명의 위원이 2년 임기 동안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분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해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이행과제 추진현황 점검, ▶문화상 후보자 추천, ▶문화영향평가 사업선정, ▶대시민 공개포럼 개최 등 문화정책을 심의 및 자문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1)에 따르면 서울시 각종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1)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규정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임기 종료 이후 위원회 운영은 중지된 상태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사항은 바람직한 조치로 이해됨.

< 최근 3년, 제2기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운영 현황 >

연번	개최일	재적/참석인원	안건명
1	'20.6.25.	35명/22명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선출 ·정책토론(코로나19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과 전망)
2	'21.3.31.	35명/22명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논의 등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 활동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15명 이내가 바람직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p19 >

3
위원회 구성

I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위원장·부위원장·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음
- 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하여 적정인원(15명 이내가 바람직)으로 정하되,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홀수로 정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시장이 임명(지명) 또는 위촉, 호선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운영 현황을 볼 때 참석 인원이 22명으로 운영된 현실을 고려하여 위원 수를 기존 35명에서 20명

②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으로 축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기존 분과위원회 위원 수도 문화예술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7명 이내에서 5명 내외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인원으로 분석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15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 이종환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규남, 김길영,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아이수루,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봉준, 이상욱, 이영실, 이용균, 이종배, 이종태, 이효원, 정준호,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4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를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명의 '문화도시'와 조문내용의 '문화시민도시'라는 용어가 맞지 않아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를 통일함.
- 현재 장기간 미운영 중인 문화도시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현실적인 정책 반영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서 법령의 위임 부분을 삭제함(안 제1조).
- 나. 종합계획의 명칭을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에서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다. 제4장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로 변경함.
- 라. 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에서 "문화도시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5조).
- 마.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위촉위원수를 3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규모 축소하도록 개정을 추진함(안 제16조).
- 바.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분과명 명시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수를 7명 이내에서 5명 내외로 적정화하도록 개정을 추진함 (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를 “시행령에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시민도시 종합계획”을 각각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를 “문화도시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3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분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명 이내”을 “5명 내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시행령에서</u> ----- ----- ----- ----- ----- -----.</p>
<p>제13조(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p> <p>② 시장은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자치구,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p>	<p>제13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문화도시 종합계획”----- -----.</p> <p>② ----- <u>문화도시종합계획</u>----- ----- ----- ----- -----.</p> <p>③ -----</p>

현행	개정안
<p>계획에 <u>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u>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제4장 <u>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u></p> <p>제15조(<u>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u>)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 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u>(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p>	<p>----- <u>문화도시종합계획</u>-----</p> <p>-----</p> <p>-----</p> <p>-----</p> <p>-----</p> <p>④ 시장은 <u>종합계획에 따른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u>계획을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의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4장 <u>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u></p> <p>제15조(<u>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u>) ① -----</p> <p>-----</p> <p>-----</p> <p>-----</p> <p>-----</p> <p>----- <u>문화도시위원회</u>-----</p> <p>-----</p> <p>-----</p> <p>② -----</p>

현행	개정안
<p>을 심의·자문한다.</p> <p>1. (생략)</p> <p>2. <u>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u>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p> <p>3. ~ 6. (생략)</p> <p>③ (생략)</p> <p>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3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2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u>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협치 분과</u>로 구성된 <u>분과위원회</u>를 둘 수 있다.</p> <p>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u>7명</u>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 ⑤ (생략)</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문화도시종합계획</u>----- ----- -----</p> <p>3. ~ 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 ----- <u>20명</u>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21조(분과위원회) ① ----- ----- ----- <u>분과위원회</u>----- ----- -----.</p> <p>② ----- ----- <u>5명</u> <u>내외</u>-----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